국가근로 장학금

□ 목적: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근로를 통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장학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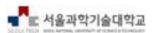
□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

〈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(공통) 〉

- 지원자격 요건**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(예정)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장학사업 신청자
 - ※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이하 확인자 (단, 봉사유형(장애대학생 지원, 외국인유학생 지원)은 소득기준 미적용)
- 직전학기 미선발자(60% 이상) 우선 선발(교육부 권장사항)
- 근로업무별 부적합, 과거 근태·근로불량자·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
- 대체장학생 선발기준
 - 근로장학생 활동 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근로유형별 선발기준을 준용하여 부서별 추천 및 선발 진행

< 일반교내근로 및 교외근로 >

- 선발기준 : 근로기관(근로지)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순 위자 순으로 선발 (순위방식)
 - (1순위) 학자금지원구간 4구간 이하자 중 미 선발자
 - (2순위) 학자금지원구간 5-6구간 해당자 중 미 선발자
 - (3순위) 학자금지원구간 7-8구간 해당자 중 미 선발자



- 동순위일 경우 1)학자금지원구간이 낮은 자, 2)성적 상위자*, 3)우선 선발 권장 사유자**순으로 선발
 - *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 상위자
 - ** (「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」 우선선발 사유자) 장애인, 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,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자,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・중증환자, 학업・육아 병행 학생
 - ※ 다만, 근로기관의 사정에 따라 직무(전공) 적합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기준(순위방식) 외 지원대상 학생을 선발할 경우 추천 사유서 작성

□ 업무처리절차

주체	장학복지팀	장학복지팀		장학생		근로기관 (근무지)		장학복지팀		장학생
단계	운영 계획 수립 및 제출	장학 공고	1	근로 신청 (희망근무지)	1	장학생 선정	1	장학생 최종 선발	1	근로진행
세부 내용	운영 계획 수립 장학재단 제출	국가근로 후보자 명단 통합정보시스템 업로드 (소득분위 제공)		근로지원서 제출 (근로기관)		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 모집 및 선정 (추천서 제출)		선발명단 확인 후 재단 시스템 등록		근로진행 및 출근부 입력